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인천광역시 송도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인천광역시 송도구 설치〉

■ 정일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173호)

2024. 9.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정일영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4. 6. 5.
3. 회부연월일 : 2024. 6.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법」 및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구당 평균 인구가 20만 이상일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승인을 거쳐 행정구역을 개편할 수 있게 되어 있음. 지난해 인천광역시 중구, 동구, 그리고 서구의 행정구역 생활권 불일치에 따른 주민 불편이 가속화됨에 따라 자치구별 인구와 면적 등을 균형 있게 분산하고 행정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안이 통과되었으며, 이에 송도국제도시 분구 역시 주민들의 큰 기대를 안고 있음.

한편, 송도국제도시의 인구는 2024. 4. 기준 204,944명에 달하고 있고 대규모 도시개발 계획 등에 따른 추가적인 인구 유입으로 경제자유구역인 2030년에는 인구수가 무려 300,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는 등 기존의 행정 시스템으로는 주민들의 행정수요를 충족하기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덧붙여 송도국제도시 내 인구가 급증하여 행정공급 쏠림 현상이 해당 도시에 더욱 가속화되고 있어 향

후 원도심 내 행정체계가 열악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은 상황임.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간 중복된 행정 등으로 도시개발 계획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꾸준히 생기고 있어 행정구역을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음. 덧붙여 송도국제도시로부터 발생하는 개발 이익금 등은 지역 내 미개발부지의 조속한 개발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문제 역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송도구 설치를 통해 행정체계를 확대 구축하고 지역 특성에 맞도록 행정 구조를 개선함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인구와 도시개발에 맞춰 행정 수요가 충족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복리 증진과 균형있는 지역 발전을 이끄는 데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제정안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관할구역에서 송도동을 제외하고, 종전의 연수구 송도동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송도구’를 설치하려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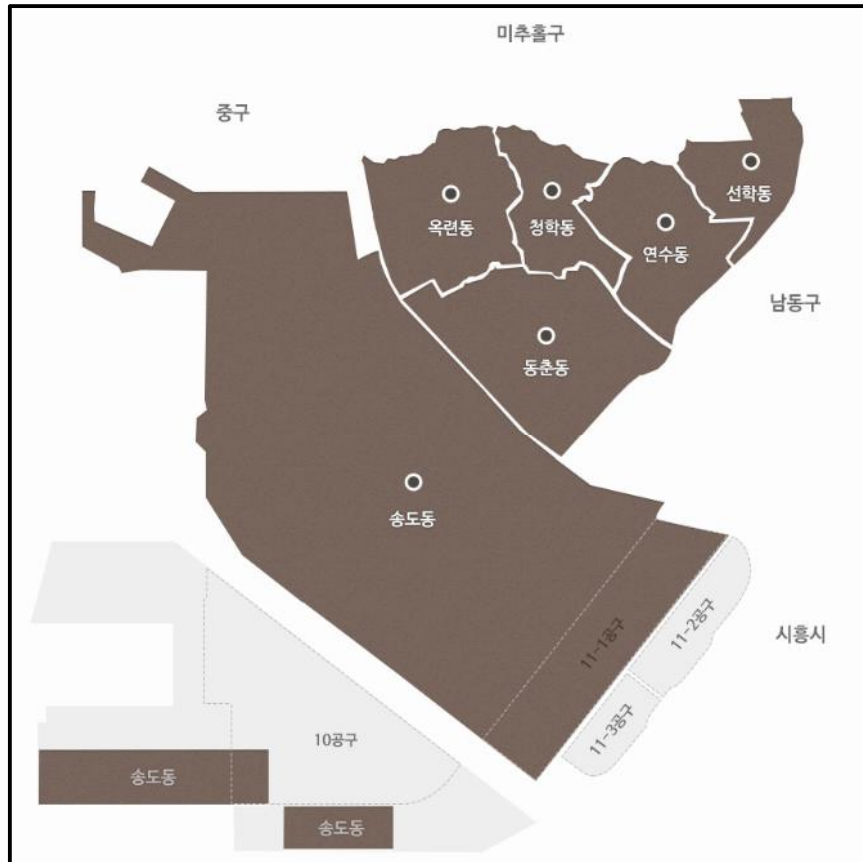
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송도구를 설치함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등) ① 인천광역시에 송도구를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자치구의 명칭	관할구역
송도구	종전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일원
②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관할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송도구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송도동 면적 및 총인구 등 현황>

구분	면적(㎢)	총인구(명)	세대수(세대)	사업체(개)	종사자(명)
송도동(A)	37.98	211,681	77,563	17,415	99,724
연수구(B)	56.19	421,600	161,090	34,041	154,957
인천광역시(C)	1,067.1	3,042,322	1,366,579	308,892	1,223,448
연수구 내 비중(A/B)	67.5%	50.2%	48.1%	51.1%	64.3%
인천광역시 내 비중(A/C)	3.5%	6.9%	5.7%	5.6%	8.1%

※자료: 연수구 구정현황(2024. 4. 1. 기준)

<연수구 내 법정동 지도>



※자료: 연수구 홈페이지(<https://www.yeonsu.go.kr/main/yeonsu/intro/district LAW.asp>), 검색일 2024.8.7.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¹⁾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은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정안과 같이 인천광역시 송도구를 설치할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임.

다만, 「지방자치법」 제5조제3항²⁾은 지방자치단체를 폐치·분합할 때

1) 「지방자치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중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2) 「지방자치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

에는 관계 지방의회³⁾(해당 지방의회 및 상급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향후 논의 과정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등 청문절차의 실시 여부를 살피는 한편,

해당 과정에서 제기된 지역의 다양한 의견과 함께 폐치·분합의 대상이 되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지리적 위치, 역사, 생활권, 인구수, 재정여건, 균형발전 필요성 등 제반 사정과 폐치·분합에 따른 긍정적·부정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정안의 도입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⁴⁾.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인구·면적·지리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존 행정체제로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자치구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경우 ①「행정구역 실무편람」에 따른 분구 검토 인구 기준(50만명)을 충족하지 못했고⁵⁾, ②송도구 설치 시 잔여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불확실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을 들어야 한다. 다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

2.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할 때(경계변경을 할 때는 제외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변경할 때(한자 명칭을 변경할 때를 포함한다)

3)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조(관계 지방의회) 법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관계 지방의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그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로 한다.

4) 참고로, 2023년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 추진 당시 ‘송도구 설치’에 관한 논의가 있었으나,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3개 자치구만 설치되어 2026년 7월 1일부터 출범할 계획임.

5) 「행정구역 실무편람」 p.119

(3) 자치구 설치(법률 제정사항)

나. 판단기준(적합요건)

· 자치구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 등의 구 중 인구·면적·지리적 여건 등을 종합 검토, 기존행정체제로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곤란한 경우(특별시 70만, 광역시 50만 이상 시 검토)

필요하다는 입장임.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 연수구는 지방의회 의견수렴 등 절차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34